

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송파구보건소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0년 9월 7일

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분야	임용등급	인원	근무기간 (주당 근무시간)	담당업무
감염병 역학조사관	일반임기제 8급	1명	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 (주당 40시간)	▪ 감염병 관리 및 역학조사 ▪ 의료기관 감염병 감시업무 및 감염병 예방홍보 등

- 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
- ※ 근무시간은 감염병 비상근무시 연장근무 가능
- ※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지정, 교육수료(2년과정)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(기본교육 1회, 지속교육 6회 및 논문, 보고서 등 수료요건* 충족 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),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용 후 2년간 교육 훈련이수 필수

<수습역학조사관 수료요건>*

구분	수료기준	세부기준
기본교육	1회	3.5주 (136시간)
지속교육	6회	각 3일 (학술대회 포함)
학술지 논문게재/학술구연발표	1회	교육수료심사위원회 승인
유행역학조사보고서	2편	
감염병감시분석보고서	2편	
보도자료/홍보자료	2편	부서장 확인

2. 법령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21조의3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
-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3. 응시 자격 요건

○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지역 · 연령 · 성별 제한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직무분야관련 응시자격 요건

채용분야	임용등급	자 격 기 준
감염병 역학조사관	일반임기제 8급	■ 아래 2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자 1. 「감염병예방법 제60조의2 제3항2호 및 3호」에 따른 면허·자격증 소지자 2. 보건관련학과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		▶ 면허·자격증: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, 약사, 수의사 등 ▶ 관련학과: 보건, 의료, 간호분야 등 ▶ 실무경력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의료기관(의료법제3조제2항), 시설 등에서 보건, 의료, 간호, 진료 등 기타 보건관련분야로 인정되는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 ※ 근무경력 자격기준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4호 및 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
4. 보수 수준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『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』에 의거 임용등급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

【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(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)】 (단위 : 천원)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	비 고
일반임기제 8급(상당)	54,431	38,827	

※ 『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』에 의거 별도 수당 지급

5. 시험일정 및 방법

가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0. 9.18.(금)~9.22.(화) <3일간 09:00 ~ 18:00>
- 접 수 처: 송파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건강기획팀
- 접수방법: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
 - ※ 방문접수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
 - ※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 - ※ 송파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 - ※ 우편접수 시 증지수수료(5,000원) 동봉

나. 시험일정

내 용	일 정	장 소
1차 서류전형	2020. 9.22.(화)	보건소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0. 9.23.(수)	송파구 홈페이지
2차 면접시험	2020. 9.24.(목)~9.28.(월) 기간 중 1일(예정)	보건소
면접합격자 발표	2020. 9. 29.(화)	개별통보

※ 2차 면접시험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면접일시를 공지할 예정입니다.

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·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.

- 1차시험(서류전형): 합격자 발표 - 구 홈페이지 공고
 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,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 - 단, 응시인원이 9명 이상인 경우 실무경력이 많은 순으로 상위 8명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

- 2차시험(면접시험)
 -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 - 자질 및 발전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- ※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 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송파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됩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 :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(개별통보)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6.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부 - [별지 1]
- 이력서 1부 - [별지 2]
-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1부 (A4용지 2매 이내, 13포인트 기준) - [별지 3]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- [별지 4]
- 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 1부 - [별지 5]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학위증명서) 1부(원본)
 - ※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관련 면허·자격증 사본 1부
- 경력증명서(근무처별) 1부 - 미제출시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응시수수료: 송파구수입증지(5,000원) 첨부(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 6번 창구)
- ※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거나,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된 것만 인정)내의 서류여야 합니다.

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

신원 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 처분 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합격자 발표일 등 본 채용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사항은 별도로 송파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송파구 보건소 채용담당(☎ 02-2147-3466)

< 신청서류 반환 안내 >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(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함)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.

기간 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예정.